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0 | 2026.2.23 (2026.2.9~2026.2.2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대책은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에 맞춰 제조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려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유사 자산에 준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고부가 전환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공정거래법 특례·고용 지원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0인)**」 ,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박성준의원 등 10인)**」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8인)**」 ,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1인)**」 ,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의원 등 11인)**」 ,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6인)**」 ,

일터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ILO가 채택한 제190호 협약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에 부합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는 등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 <재경위>, <국토위> 등에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과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대미투자법특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의결(기획예산처) 8
- 「'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산업통상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1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11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2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1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1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5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예산처) 15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부) 16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2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박성준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6인)	25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17인)	25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박성준의원 등 10인)	2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김건의원 등 36인)	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1인)	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8인)	27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28
•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1인)	28
•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9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2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3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30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3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31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31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의원 등 32인)	3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6인)	3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6인)	33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33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3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3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35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3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
- [지적재산권]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 관련 최근 판결 동향 - 영국 High Court의 Getty Images 판결과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Advance Local Media 결정
-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
- [방송통신(TMT)]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 [에너지 · 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소송]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금융] 영문공시,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임원보수 공시 강화 -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성 대두
- [조세] 유류분 제도 개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의결 -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新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사업·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등 新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을 통해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BTL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으로 생활밀착형 시설을 확대 -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지역업체 참여 유인 제고, ‘민자 카라반’ 가동 등을 통해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전력비 제도 개선 등 현장의 애로 해소 및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2026-02-11
-------	--	------------

기획예산처는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힘

금번 대책은 편중된 민자시설(도로·철도 등)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하였음. 전통적 SOC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해 경제성장,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 활성화,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계획임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먼저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新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新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하여 민자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임.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사업모델 마련 등을 거쳐 AI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 또한, ‘단순 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하는 등 향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급증에 대응해 운영형 민자를 확대

② 국민참여 확대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과 민자사업이익을 공유하고, 생활 SOC 활성화 등으로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 특히, 일반 국민은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회계처리기준 마련 등으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추진. 민자 기반의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 종합평가(AHP)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확대

③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체제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자사업 추진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할 계획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또한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지역 민자사업을 지원.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를 추진하고, RFP 평가시 안전배점 상향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

④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전력비 개선 등으로 착공지연을 해소하며, 정보공개 강화·정보제공 확대로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단축(최대 5개월) 등을 통해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어로 해소를 위해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도 해소. 또한,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 마련·부대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

산업통상부

『'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

- 신규 95개 과제 공고, 1조 2,910억원 투자
- 철강·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AI 연계과제 지원

2026-02-11

산업통상부는 『'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힘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706억원을 투자하며,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8,204억원을 투자함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①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②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③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임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 철강 분야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등 고부가 특수탄소강 개발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소형 전장부품용 초고순도·초박막 폴리프로필렌 필름 소재 등 스페셜티 화학 소재 개발을 지원

둘째,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을 위해 65개 과제 427.5억원을 신규 지원.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소재·부품, 제련 부산물 활용 희소금속 정련 기술 등 개발을 지원

셋째, 소재개발 분야 AI 활용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기반구축사업(가상공학플랫폼)과 연계하는 소재 AI 연계 과제를 처음 도입. 이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성 예측, 구조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개발을 지원

산업부는 공고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법무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2027-02-20 시행 예정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026-02-10 시행
-------	------------------------------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6-02-10 시행
-----------	--------------------------------	---------------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나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2026-08-11 시행 예정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08-11 시행 예정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8-08-20 시행 예정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2026-08-20 시행 예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26-06-01 시행 예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사의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8-11 시행 예정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원재료의 가격 외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령

2026-02-10 시행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0 시행 예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復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13. ~2026.03.25.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궤련 담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 허가 신청이 곤란함.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에 맞춰 제조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허가의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 (안 4조의2 신설)

- 자본금 : 100억원 이상
- 시설기준 : 연간 40만L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 가공부터 액상제조,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출 것
- 안전기준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 또는 사용업)를 취득할 것
-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6, 팩스: 044-215-8112\)](tel:044-215-5176)

기획예산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19. ~2026.03.16.
-------	-----------------------------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자산에 준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주요 내용은

①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확대 (안 제34조의3)

- 현행 자본금의 30%로 제한된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을 자본금의 100%로 확대하여 다양한 자금 유입 및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의5)을 기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을 추진

※ 문의처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전화: 044-214-3338, 팩스: 044-214-3816\)](tel:044-214-3338)

산업통상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02.20.
~2026.03.23.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51호, 2025. 12. 30.)됨

이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고부가 전환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공정거래법 특례·고용 지원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전화: 044-203-4937\)](tel:044-203-493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11.
~2026.03.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25.11.6)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①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제14조)

-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의 고려사항으로 객관적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세부 심사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②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제15조)

-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이 되는 성과평가 하위 비율을 5% → 10%로 확대하고, 누적 부진 횟수를 3회 → 2회로 강화

③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특화사업자 자격요건 마련(제28조)

-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명확화

④ 규제특례 조건의 부가기준 마련 (제57조의3, 제64조의3 신설)

-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시, 조건의 부가기준을 명확·구체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전화: 044-204-7209, 팩스: 044-204-7239\)](tel:044-204-7209)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13.
~2026.03.25.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 ① 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
- ② 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tel:044-204-7942) (전화: 044-204-7942, 팩스: 044-204-792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2.11.
~2026.03.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tel:044-201-6787) (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02.10.
~2026.03.23.

공동주택의 6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실외소음 기준 대신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소음배출시설로부터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 배치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tel:044-201-3367) (전화: 044-201-3367, 팩스: 044-201-568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09.
~2026.03.2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심사계획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단일화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문의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전화: 02-397-7260, 팩스: 02-6273-781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2026-02-09 발의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2026-02-09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4조)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2026-02-11 발의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4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정무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2026-02-11 발의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026-02-12 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책임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여부 확인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2026-02-12 발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의 조사·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자료제출 거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확보 수단이 부족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 수단을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2인)

2026-02-12 발의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026-02-12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품·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과 같이 납품업자 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업계 관행인 월 정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유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2026-02-12 발의

금융회사는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는지,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알려진 바가 없고, 주주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회 운영(지배구조), 소극적인 주주환원(배당성향), 과다 임원보수 등으로 여전히 투자대상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 PBR 2 이하의 낮은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 그 후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의 주식시장은 금융회사들과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 주식시장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상법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참여자인 금융회사,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의 문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를 금융감독 당국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판단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40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2-19 발의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3조제5항 신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2026-02-20 발의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열거된 다크패턴 금지 유형의 일부 추상적 문구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신판매업자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기에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1조의2)

재정경제기획
위원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박성준의원 등 10인)

2026-02-09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5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6-02-11 발의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6인)

2026-02-12 발의

현행법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국방위원회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17인)

2026-02-09 발의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성능과 운용개념을 주도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이버 무기체계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가 매뉴얼이나 지침 수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획득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국방위원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2-12 발의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조제5호바목, 제8조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박성준의원 등 10인)

2026-02-09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4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김건의원 등 36인)

2026-02-09 발의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1인)

2026-02-10 발의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메신저·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연락처·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제한적으로만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마저도 제공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어 피해사망자를 대리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가족·친지에게도 이용정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7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8인)

2026-02-12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1인)

2026-02-12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2026-02-12 발의

최근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등의 공연 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대형 공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연 시설이 아닌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고 있어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공연장의 부족으로 국내 팝스타들이 공연시설을 갖춘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팬들의 방한 기회를 상실시켜 한류 열풍을 경제적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K-팝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문화·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2026-02-03 발의

인공지능 전환(AI)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업무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지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한 원천인 데이터의 생성 및 확보,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반 부족, 지원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외되어 있음

우리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같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없이는 인공지능의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되는 바, 법률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집중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제조업 생산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
인)

2026-02-10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제한하고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주식등 양도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이미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35조제3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2026-02-20 발의
---------------------	--	---------------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등)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2026-02-11 발의
---------	---------------------------	---------------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02-20 발의
---------	-------------------------------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인증·평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정 취소처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정 취소시 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5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2026-02-09 발의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026-02-10 발의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의원 등 32인)**

2026-02-10 발의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6인)

2026-02-1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6인)

2026-02-1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과로·스트레스 등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플랫폼 운전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2026-02-12 발의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등은 일터에서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이원적으로 규율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가 단편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일터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2019년 6월 10일 ILO가 채택한 제190호 협약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이하, ILO 제190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명시하고, 이원적으로 규율되던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규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일터에서의 괴롭힘은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무제공자와 고객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괴롭힘의 개념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제도 오남용은 방지하는 균형잡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장 내 자율적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 분쟁 해결절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6-02-13 발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를 비롯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계통접속 지연, 중복투자, 환경 및 입지 갈등,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됨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제2호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6-02-13 발의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체결에 의해 장시간 근로 관행과 공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①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②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시간·공짜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3항·제4항 및 제56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2026-02-10 발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정부 대책의 실효적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불법하도급의 관리·감독에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수준이 불법하도급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6-02-19 발의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읍·면 지역 내 주거혜택 부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 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호)

국토교통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026-02-20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2/23(월) 10:00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비금융)
재경위	전체회의	2/23(월) 10:00	- 법안 상정, 업무보고(재경부 · 기획처 · 한국은행)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2/24(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2/25(수) 10:00	- 법안 의결
문체위	전체회의	2/23(월) 10:00	- 법안 상정
		2/26(목) 10:00	- 법안 의결
국토위	전체회의	2/24(화) 10:00	- 업무보고
대미투자법 특위	전체회의	2/24(화) 10:00	- 법안 상정, 대체토론
	법안소위	2/25(수)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 미나	2/23(월) 10:00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진종오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2/23(월) 14:00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국회 토론회	민병덕·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2/24(화) 13:30	위기 관리·대응에서 공급망 주도형으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	어기구·정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2/24(화) 14:00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토론회: 2차 토론회: 전력 과 용수 중심, 지산지소 실현 방안 모색	김종민·최형두 의 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2/24(화) 14:00	공격 헬리콥터와 드론의 미래	강선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5(수) 14:00	12·29 여객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안전조 직 선진화	박상혁·김승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26(목) 16:30	2025 국가발전대상 시상식 및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9 차 정책세미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2/25(수)	「Data&Law」 제2026-1호(통권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	
	2/25(수)	「금주의 서평」 제2026-7호(통권 제766호) 발간		
	2/26(목)	「Data+」 제2026-2호(통권 제26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2/9(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2호(통권 제26호)	국회도서관	
	2/11(수)	「금주의 서평」 제2026-6호(통권 제765호)		
	2/10(화)	「NABO Focus」 제136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9(월)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
2/10(화)	지적재산권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 관련 최근 판결 동향 - 영국 High Court의 Getty Images 판결과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Advance Local Media 결정
2/11(수)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
2/11(수)	방송통신(TMT)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2/12(목)	에너지·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2/12(목)	소송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13(금)	금융	영문공시,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임원보수 공시 강화 -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성 대두
2/19(목)	조세	유류분 제도 개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